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호사와 노인의 비교연구*

고 정 미¹⁾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가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층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이 점은 위상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사회와 가족의 부양에 의존도가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노인수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Jo, 2008).

노인학대 실태는 가정안에 은폐되어 있거나 시설 안에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학대실태 조사와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피해노인의 72%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하였다(Yonhap News, 2010, June 14). 그리고,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수는 2005년 2,038건에서 2007년 2,312건, 2008년 2,3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8년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4%로 가장 많으며, 방임이 23.0%, 신체적 학대가 17.8%,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재정적 학대가 1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사회는 학대받는 노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였을 때도 피해노인의 약 70%는 끝까지 참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까지 고려하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Kim, 2003). 노인학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적극적인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cmklee@sungshin.ac.kr)

투고일: 2010년 6월 23일 심사회의일: 2010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3일

구가 시작되었다. 정부차원에서 1997년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노인학대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일부로 포함하였고 처음으로 노인학대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되었으며(Yoo & Kim, 2004),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노인인구의 건강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인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 및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노인대상자들을 접촉할 수 있으므로 노인학대를 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Song, 2007). 간호사들은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잠재적 노인학대 상황의 신호를 발견하여 예방을 위한 중재를 할 수 있고, 실질적 노인학대가 발견된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Mandiracioglu, Govsa, Celikli & Yildirim, 2006). 이와 같이 간호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법적책임과 동시에 예방과 중재의 전문가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무엇보다도 학대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고할 것이 요구된다.

노인의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의 관점과 다르다(Hudson et al., 1999). 잠재적인 학대상황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Choi, 1993)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의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손상으로 인하여 부양자의 부담이 높을 때,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신체적 구금이나 권리침해를 한 경우에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또한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여러 인종 간 원조요청 태도를 조사한 Moon과 Benton(200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인종집단에 비하여 학대사건에 가족외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것을 꺼려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 조사된 연구결과(Jo, Kim, & Kim, 1999)에서도 학대 피해노인의 62.8%는 끝까지 참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학대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

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노인들의 인식과 신고의향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양과정에서 가족들에 의한 학대가 빈번하다(Seo, 2000). 그러므로 간호사가 노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노인부양자의 행위를 노인학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할 때 피해당사자인 노인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당사자의 학대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의향을 도외시한 학대관련 전문가들의 학대상황에 대한 학대판정이나 중재방안은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Choi, 2004).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의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문제와 관련된 개입전략이나 정책들이 노인학대 피해 당사자인 노인들을 배제시키고 주로 학대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Woo, 2002; Yoo & Kim, 2004). 동일한 노인학대 상황을 두고 피해당사자인 노인과 학대관련 전문가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갖는 경우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은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와 학대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서 간호학에서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노인간호학이 간호학의 전문 분야로 출현하게 된 이후 간호학 분야에서는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지만, 노인학대에 관한 간호학적 연구는 노인학대와 간호중재에 대한 문헌연구(Kim, Kim, & Sohn, 1998)와 재가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Yang, 2004), 사별노인의 성별에 따른 의존성과 학대 및 우울에 관한 연구(Kim, Yang, & Kim, 2005), 간호 측면에서 본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Song, 2007),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Ko, 2010) 등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그동안의 노인학대 관련 연구들이 주로 사회복지학계 쪽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Song, 2007). 이러한 현실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실시로 노인인구의 건강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 료서비스의 일차적 책임자이면서 노인학대 문제의 최 일선에서 역할 수행을 해야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Ko(2010) 외에는 없으며 학대 피해당사자인 노인과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할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에 관한 비교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갖는 간호사들이 그들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대피해 당사자인 노인과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할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노인학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노인학대문제의 실제적 개입에 있어 가장 기초적 기준점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유형 및 각 사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유형 및 각 사례에 대한 신고의향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간호사와 노인의 인식과 신고의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1명의 간호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326명의 노인으로 총 627 명이며 비확률적 표집법으로 편의 추출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이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회갑연령이나 발달단계 분류 등을 근거로 하여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Han, 2000)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간호사 표본을 위하여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 5개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각 병원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가 병동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가 참여를 원하는 병동 수간호사에게 의뢰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병원에 70부씩 총 350부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4부로 회수율은 92%이었다. 이 중 답변 내용이 부실한 자료는 제외하고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표본을 위한 자료수집은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노인간호학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훈련을 받고 노인정, 복지관, 교회, 동네어르신을 1:1로 개별 면담을 한 후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다. 수집된 326부는 모두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용어의 정의

1) 노인학대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의 부양자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동 및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한다(Lee, 2005). 본 연구에 포함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성적 학대 및 방임으로 규정한다(Bang, 2009).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힘에 의한 학대이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강제로 묶어서 방이나 지하실에 강금하거나,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

물을 강제 복용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Kim et al., 2005).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성적학대는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Lee, 2005).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의료처치 제공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박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5).

4. 연구 도구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oon과 Williams(1993)가 개발하였으며 Yoo와 Kim(2004)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들을 사용하였다. Moon과 Williams(1993)는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인식에 있어서 인종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13개의 가상적인 노인학대 사례를 사용하였다. Yoo와 Kim(2004)은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Moon과 Williams(1993)가 개발한 13개의 사례 가운데 노인학대로 보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에 적절하지 않는 1개의 사례(재정적 학대와 관련된 사례로 남편이 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제외한 12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Yoo와 Kim(2004)은 영문사례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영어 이름 대신에 한글의 성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Yoo와 Kim(2004)의 연구에 사용된 12개의 사례 중 재정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혼합된 사례 1개를 제외한 11개를 사용하였다. 11개의 사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의 5개 영역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1개의 사례 중 신체적 학대 영역 사례가 3건(사례1, 3, 4), 정서적 학대 영역 사례가 4건(사례2, 6, 7, 11), 재정적 학대영역 사례가 1건(사례9), 성적 학대 영역 사례가 1건(사례5), 방임 영역 사례가 2건(사례8, 10)이다. 각 사례에 대한 응답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심한 학대이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11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및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11개의 노인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도구는 가상적인 노인학대 상황이 제시된 사례들로 구성되어있다. 제시된 사례에는 학대 피해자인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행위의 경중 및 행위가 발생된 배경과 같은 상황변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 노인학대 도구들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노인학대 사례를 판단해야하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유효하다(Bang, 2009; Ko, 2010). Yoo와 Kim(2004)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가 .81로 조사되었다. 노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노인집단과 간호사 집단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79로 나타났다.

제시된 유형별 11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학대

사례1: ...아들은 화가 날 때마다 가끔씩 김씨 할머니에게 프라이팬을 던진다고 한다. 5년 동안 프라이팬을 던진 횟수는 모두 3번이다

사례3: ...박씨 할머니는 가끔 울고, 소리를 지르고 가끔 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 이후 딸은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의사가 몸에 좋다고 조제한 약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준다. 딸은 그 약이 수면제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사례4: ...김씨 할아버지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를 거부... 동거하고 있는 아들은 부인도 직장생활을 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자기와 부인이 하루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아버지를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 두고 출근을 한다.

② 정서적 학대

사례2: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서 식사와 약복용하는 것을 거부... 딸은 이씨

할머니에게 음식과 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례6: ...며느리는 이씨 할아버지에게 하루 3끼 꼬박 챙겨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배가 고프다고 불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식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과식하여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주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겠다고 하면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하였다.

사례7: ...양씨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실수로 마루바닥에 놓여있는 아들의 안경을 밟아 렌즈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 아들은 매우 화가나 양씨 할머니에게 항상 조심성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례11: ...중풍에 걸린 오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간호혜 주기를 부탁... 아들은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들 부부 수입의 1/4을 간병인에게 지급한다. 아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오씨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가끔 술이 취했을 때, 어머니에게 나도 친구처럼 저축하고 집도 사고 싶으면서 빨리 자살하라고 울면서 소리 지른다.

③ 재정적 학대

사례9: ...권씨 할머니는 글을 몰라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돈 1억여 원을 맡겼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아들은 가끔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④ 성적학대

사례5: 차매를 앓고 있는 최씨 할머니는 큰 딸 가족과 살고 있다. 사위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큰 딸이 집에 없는 때, 사위는 최씨 할머니를 설득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누드사진을 찍고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⑤ 방임

사례8: 중풍에 걸린 유씨 할머니는 신체의 오른쪽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 딸이 어렸을 적에 유씨 할머니는 어머니로서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딸에게 책임을 돌려 비난을 하였기 때문에 딸의 어린시절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딸은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주고 어머니 방청소도 하지 않는다.

사례10: 3개월 전 박씨 할아버지는 딸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니 병원예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예약도 하지 않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는다.

2) 신고의향

신고의향은 본 연구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로서 사용된 11개의 가상적 사례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안한다' 0점, '한다' 1점으로 응답한 것이다. 전체 신고의향 각 사례에 대하여 '신고한다'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Moon & Williams, 1993).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간호사와 노인의 학대유형 사례별 인식 차이는 t-test를 활용하였다.
- 간호사와 노인의 학대유형 사례별 신고의향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와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0.8세 이고 97.7%가 여성이며 64.5%가 미혼이었다. 간호사의 교육정도는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48.5% 이었고, 4년제 졸업간호사는 38.2%, 석사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13.3%이었다. 주요성장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간호사가 83.3%이었다. 대상자의 34.7%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50.8%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urses=301, Elderlies=32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or	M(SD)
Nurses		301		
Age(yr)		30.80(8.31)		
Gender	Female	294(97.7)		
	Male	7(2.3)		
Marital status	Married	104(34.6)		
	Not married	194(64.5)		
	† Others	3(0.9)		
Education	Associate degree	146(48.5)		
	Bachelor degree	115(38.2)		
	Master degree	36(11.9)		
	Doctorate degree	4(1.4)		
Home town (when growing up)	Large city	145(48.5)		
	Middle sized city	104(34.8)		
	Rural	50(16.7)		
Religion	Buddhist	45(15.0)		
	Protestant	90(30.0)		
	Catholic	58(19.3)		
	None	104(34.7)		
	Others	3(1.0)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s	Yes	153(50.8)		
	No	148(49.2)		
Intention to report(yes)		7.33(2.61)		
Elderlies		326		
Age(yr)		70.2 (6.20)		
Gender	Female	179(55.9)		
	Male	141(44.1)		
Marital status	Married	213(66.1)		
	Widow	99(30.8)		
	† Others	10(3.1)		
Education	None	21(6.6)		
	Elementary school	82(25.8)		
	Middle school	73(22.4)		
	High school	94(28.8)		
	College	48(15.1)		
Home town (when growing up)	Large city	80(24.8)		
	Middle sized city	100(31.0)		
	Rural	143(44.2)		
Religion	Buddhist	80(24.8)		
	Protestant	115(35.7)		
	Catholic	53(16.5)		
	None	68(21.1)		
	Others	6(1.9)		
Living arrangement	Couple only	105(32.4)		
	Adult children	126(38.9)		
	Relatives	6(1.9)		
	Alone	56(17.3)		
	Others	31(9.6)		
Intention to report(yes)		2.76(2.69)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 (Missing excluded); † =Others : not married, divorced.

노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노인과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 평균연령은 70.2세 이고 노인의 55.9%는 여성노인, 44.1%는 남성노인이었다. 노인대상자의

66.1%는 배우자가 있는 반면, 30.8%는 사별하였다. 노인의 6.6%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25.8%는 초등학교 졸업, 22.4%는 중학교 졸업, 28.8%는 고등학교 졸업, 15.1%는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노인들의 55.8%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성장하였으며, 반면에 44.2%의 노인은 농어촌에서 성장하였다. 노인의 21.1%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 중 32.4%는 부부만 살고 있었고 38.9%는 성인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17.3%는 독거노인이었다.

제시된 11개의 사례들에 대하여 간호사는 평균 약 7개의 사례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노인은 약 3개의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학대유형 및 사례별 인식차이

Table 2는 간호사와 노인의 학대유형 사례별 인식 정도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간호사는 5점 만점에 평균 3.11, 노인은 2.98로 나타나

간호사와 노인 대상자들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최고점수는 간호사의 성적 학대(4.53)에 대한 인식이며 가장 낮은 것은 간호사의 정서적 학대(2.48)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노인의 학대유형별 인식 순위는 같았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와 노인은 각각 성적학대(평균 4.53, 4.45), 신체적 학대(평균 3.57, 3.29), 방임(평균 3.16, 2.99), 재정적 학대(평균 2.72, 2.65), 정서적 학대(평균 2.48, 2.46)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두 집단 간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학대 전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t=2.53, p=.012$).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t=4.19, p<.001$), 방임($t=2.52, p=.012$)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간호사들이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신체적 학대: 간호사 3.57, 노인 3.29; 방임: 간호사 3.16, 노인 2.99).

신체적 학대를 보면 간호사와 노인은 사례별 심각성 인식순위를 똑같이 인식하였다. '부양자가 노인을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 두고 출근을 한다'를 가장 심각한 신체적 학대 상황으로 인식하였으며(간호사 평균3.80, 노인 3.55), 다음으로 '아들은 화가 날 때 가끔씩 할머니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s on Elder abuse by Groups of Nurses and Elderlies (Nurses=301, Elderlies=326)

Type	Scenario	Mean±SD		t	p	
		Total	Nurses			Elderlies
Physical abuse	1	3.62	3.72±0.94	3.53±1.21	2.26	.024
	3	2.98	3.18±1.05	2.79±1.32	4.09	<.001
	4	3.67	3.80±0.97	3.55±1.30	2.70	.007
	Total	3.43±0.84	3.57±0.69	3.29±0.94	4.19	<.001
Emotional abuse	2	1.66	1.67±0.93	1.66±1.07	0.09	.929
	6	2.77	2.91±1.09	2.64±1.33	2.77	.006
	7	2.26	2.25±1.02	2.26±1.08	-0.02	.981
	11	3.18	3.06±1.13	3.28±1.37	-2.17	.031
Total	2.47±0.79	2.48±0.74	2.46±0.84	0.28	.779	
Financial abuse	9	2.69	2.73±1.07	2.65±1.25	0.80	.425
	Total	2.69±1.17	2.72±1.07	2.65±1.25	0.08	.425
Sexual abuse	5	4.49	4.53±0.73	4.45±0.84	1.34	.181
	Total	4.49±0.79	4.53±0.73	4.45±0.84	1.35	.180
Neglect	8	3.43	3.63±0.91	3.28±1.27	4.04	<.001
	10	2.71	2.68±1.00	2.73±1.10	-0.67	.506
	Total	3.07±0.86	3.16±0.75	2.99±0.93	2.52	.012
All scenarios		3.04±0.63	3.11±0.56	2.98±0.68	2.53	.012

니에게 프라이팬을 던진다'(간호사 3.72, 노인 3.53), '딸은 손님을 초대할 때마다 할머니에게 몸에 좋은 약 이라고 하며 수면제를 준다'(간호사 3.18, 노인 2.79)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간호사와 노인은 각각의 신체적 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사례1: $t=2.26$, $p=.024$; 사례3: $t=4.09$, $p<.001$; 사례4: $t=2.70$, $p=.007$), 모든 사례에서 간호사가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정서적 학대영역에서도 간호사와 노인은 사례별 심각성 순위를 똑같이 인식하였다. '자녀가 노부모를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가끔 아들은 술이 취했을 때 노부모에게 자살하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사례11을 가장 심각한 정서적 학대 사례로 보았으며(간호사 3.06, 노인 3.28), 다음으로 '노부모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하는 사례6(간호사 2.91, 노인 2.64), '할머니가 실수로 아들의 안경을 밟아 렌즈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들은 화가 나 할머니에게 조심성이 없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사례7(간호사 2.25, 노인 2.26), '식사와 약복용을 거부하는 할머니에게 딸은 음식과 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하는 사례2(간호사 1.67, 노인 1.66)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사례 2는 전체 사례 중 간호사와 노인 모두 가장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노인은 '노부모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한다'는 사례 6과 '자녀가 노부모를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가끔 아들은 술이 취했을 때 노부모에게 자살하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사례11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사례6: $t=2.77$, $p=.006$; 사례11: $t=-2.17$, $p=.031$). 사례6에서는 간호사가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사례11에서는 노인이 간호사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재정적 학대영역에서 '아들에게 맡긴 노부모의 돈을 아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다'는 사례9에 대하여 간호사와 노인은 집단 간 인식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80$, $p=.425$).

성적학대 영역의 사례로 제시된 '사위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옷을 벗게 하고 누드사진을 찍고 친구에게 보여주었다'는 상황은 간호사와 노인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사례로서 두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34$, $p=.181$).

방임영역에서 '딸은 과거에 할머니가 본인의 어린시절에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고 하며 할머니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 만 주고 할머니의 방청소도 하지 않는다'는 사례8에 대해 간호사와 노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였으며($t=4.04$, $p<.001$), 간호사가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간호사 3.63, 노인 3.28). 반면에 '부양자인 딸이 바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사례10은 간호사와 노인 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67$, $p=.506$). 간호사와 노인 모두 사례8을 사례10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3. 간호사와 노인의 학대유형 사례별 신고의향

Table 3은 각 학대사례에 대해 간호사와 노인이 신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백분율,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노인과 간호사간의 신고의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사례별로 간호사는 성적학대 유형에 속하는 사례5에 대하여 97.7%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가장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으며, 정서적학대 유형 중 사례2에 대하여 23.2%의 가장 낮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다. 노인은 간호사보다 성적학대 사례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적었으나 사례 중 가장 높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으며(195명, 61.3%), 정서적 학대유형에 속하는 사례 7(할머니가 실수로 아들의 안경을 밟아 렌즈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아들은 화가 나 할머니에게 조심성이 없다고 소리를 지른다)에 대하여 가장 낮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다(21명, 6.7%). 모든 사례에 대하여 간호사와 노인은 신고의향에 대하여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모든 사례에 대하여 $p<.001$).

4.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Table 4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의

Table 3. Distribution of Affirmative Responses of Intention to Report by Groups of Nurses and Elderlies (Nurses=301, Elderlies=326)

Type	Scenario	Yes, Intention to Report			Chi-square	p
		Total n(%)	Nurse n(%)	Elderlies n(%)		
Physical abuse	1	377(60.7)	275(91.7)	102(31.8)	233.19	<.001
	3	274(44.3)	219(73.0)	55(17.4)	194.09	<.001
	4	392(63.4)	265(88.0)	127(40.1)	153.21	<.001
Emotional abuse	2	100(16.2)	69(23.2)	31(9.7)	20.46	<.001
	6	249(40.4)	183(60.8)	66(21.0)	102.02	<.001
	7	125(20.3)	104(34.8)	21(6.7)	75.43	<.001
	11	273(44.2)	183(61.0)	90(28.5)	66.44	<.001
Financial abuse	9	256(41.3)	192(64.2)	63(19.9)	123.66	<.001
Sexual abuse	5	489(78.9)	294(97.7)	195(61.3)	124.12	<.001
Neglect	8	345(55.9)	248(82.7)	97(30.7)	169.52	<.001
	10	218(35.2)	173(57.7)	45(14.2)	128.58	<.001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11개의 사례에 대하여 심각성 정도를 측정한 평균점수이며 신고의향은 11개의 사례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간호사와 노인 모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간호사:r=.636, p=<.001; 노인:r=.486, p=<.001). 간호사와 노인 모두 사례들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록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례의 수가 많아졌다. 간호사가 노인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에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y Groups of Nurses and Elderlies (Nurses=301, Elderlies=326)

Groups	r	p
Nurses	.636	<.001
Elderlies	.486	<.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가상적 사례를 통하여 간호사와 노인이 학대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의 신고의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대에 관한 인식이 신고의향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잠재적 피해 당사자인 노인과 학대관련 전문가인 간호사의 의견차이를 고려한 노인학대 예방 및 중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노인은 가상적인 학대 사례들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인식차를 보였으며 간호사가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동일한 학대상황에 대하여 노인들의 관점과 전문가들의 것이 다르다고 Hudson 등(1999)이 지적한 점을 반영한다. 또한 노인들은 학대상황을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Choi, 1993)고 하였다. 반면에 간호사를 포함한 학대관련 전문가들은 학대가 발생한 배경보다는 업무수행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인식한다(Yoo & Kim, 2004)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간호사가 노인보다 학대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사료된다.

학대유형별로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와 노인 모두 성적학대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누드사진을 찍은 상황'을 성적 학대의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 상황에 가해자의 강제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노인은 직접적인 폭력이 개입된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Bang, 2009; Moon & Williams, 1993; Yoo & Kim, 2004)에서와 같이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가장 극단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적학대 유

형을 제외하고 간호사와 노인이 모두 신체적 학대를 가장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노인(Lim, Ju, & Cho, 2009), 사회복지사(Seo, 2000), 학대관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Jung, 2007),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Ko(2010)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나 노인들은 노인에게 가해지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 또는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 등에 비해 노인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와 같이 노인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부양과정에서 노인에게 가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손상은 노인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유발한다(Lee, 2005)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에 대한 학대관련 전문가들의 민감성이 요구된다(cited in Ko, 2010). 또한 피해 당사자인 노인과 노인학대 문제에 개입할 간호사는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에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적 학대, 방임에 대하여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간호사가 학대사례에 직면하였을 때 특히, 신체적 학대와 방임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인 노인과 전문가 집단이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전문가가 잠재적 학대상황에 대한 노인당사자와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대판정이나 중재방안을 수행했을 경우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Choi, 2004) 이 유형들에 대한 학대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간호와 노인의 학대유형에 따른 사례별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신체적 학대에 관하여 간호사와 노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든 사례에 대하여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사가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비명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속여서 수면제를 먹

인다'는 사례에 대해 노인들과 간호사들은 신체적 학대 행위 중 가장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는 점은 일치하였으나 다른 신체적 학대 사례보다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들은 노인 스스로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Choi, 1993, 2004; Yoo & Kim, 2004),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의사의 처방대로 노인에게 약을 주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우려하여 더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정서적 학대 사례 중에서 '부모부양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평상시에 노부모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지만 가끔 술이 취했을 때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살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사례를 노인과 간호사들은 정서적 학대 중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1993; Yoo & Kim, 2004)나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Moon & Williams, 1993),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Bang, 2009)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는 부양자인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녀가 가끔 노부모에게 자살하라고 소리지르는 행위'는 일반노인이나 학대관련 전문가를 막론하고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학대행위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들은 이 사례에 대하여 간호사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에 '노부모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음식에 독약을 넣겠다고 위협한다'는 사례는 간호사가 노인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노인들은 이 상황에서 자녀가 취한 행위가 매우 심하지만 노인의 건강유지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이므로 간호사들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방임에서 간호사와 노인은 '딸은 과거에 할머니가 본인의 어린시절에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통스러웠다고 하며 할머니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 만 주고 할머니의 방 청소도 하지 않는다'는 의도적 방임이 내포된 사례8을 '부양자인 딸이 바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비의도적 방임의 사례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의도적 방임이 비의도적 방임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된다는 연구결과들(Choi, 1993; Jung, 2007; Ko, 2010)을 지지하며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가 학대 상황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와 노인은 모든 가상적 사례들에 대하여 신고 의향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들이 간호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신고의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은 신고의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며 가정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결과들(Choi, 1993; Jo, Kim, & Kim, 1999; Moon & Benton, 2000)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같은 학대상황을 두고 신고의향에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인과 간호사가 같은 학대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개입방법에 관한 판단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학대문제 관련 전문가로서 간호사가 피해당사자인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될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복지를 우선해야하므로 무엇이 노인의 신고의향을 저해하는 요인인지를 밝히고 노인의 욕구를 고려한 중재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노인들이 학대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학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신고에 대한 강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들(Huh, 2003; Jung, 2007; O'Toole, O'Toole, Webster, & Lucal, 1994)을 확인한다. 이는 곧 간호사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학대 관련 연구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대관련 교육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한 Bang(2009)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2010)의 연구에서 노인학대 관련 수강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노인학대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대 관련 실무자들의 경우 의심되는 학대 상황을 정확하게 판정한다(Tilden et al., 1994)고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과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간

호사에게 의무적으로 학대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간호사와 노인을 대상으로 신고의향을 실제 신고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대상자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과의 관계가 유의하였으나 간호사보다는 약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들은 학대상황을 학대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신고를 통하여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참고 지낼 가능성이 있다(Choi, 2004; Moon & Williams, 1993)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내의 부양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노인들이 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관대하고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Choi, 2004)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특히 부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란 무엇이며 가능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와 노인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중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1명의 간호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326명의 노인으로 총 627 명이었으며 편의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기간은 간호사 표본을 위하여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되었으며 노인표본을 위한 자료수집은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은 Moon과 Williams(1993)가 개발한 가상적 노인학대 사례들을 Yoo와 Kim(2004)이 수정, 보완한 사례들 중 11개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확률적 표집법으로 추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간호사는 5점 만점에 평균 3.11, 노인은 2.98로 나타나 간호사와 노인 대상자들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대유형별로 간호사와 노인은 각각 성적학대(평균 4.53, 4.45), 신체적 학대(평균 3.57, 3.29), 방임(평균 3.16, 2.99), 재정적 학대(평균 2.72, 2.65), 정서적 학대(평균 2.48, 2.46)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신체적 학대($t=4.19, p<.001$), 방임($t=2.52, p=.012$)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사들이 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신체적 학대: 간호사 3.57, 노인 3.29; 방임: 간호사 3.16, 노인 2.99). 학대사례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례들은 사례1, 3, 4, 6, 8, 11이었다.

셋째, 학대유형별로 간호사와 노인 모두 성적 학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고의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에 대하여 간호사와 노인은 신고의향에 대하여 집단 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모든 사례 $p<.001$).

넷째, 간호사와 노인 모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향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순상관계를 나타내었다(간호사: $r=.636, p<.001$; 노인: $r=.486, p<.001$).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간호사와 노인은 학대사례들에 대하여 심각성 인식이나 신고의향에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동일한 학대상황에 대하여 노인들과 전문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노인학대 문제에 직면하여 노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관점을 고려한 예방 및 중재방안 개발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향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간호사와 노인대상으로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간호사와 노인들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 간호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학대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신고의향을 실제 신고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인내가 필요하다.
- 노인들이 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수발에 따른 조치로 간주하고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노인에게 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부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 간호사가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중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사업소, 보건소, 응급실, 가정간호사업소 등 노인학대 대상자를 접하기 쉬운 기관에 노인학대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ng, H. M.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Korean Assoc Policy Sci*, 13(1), 211-234.
- Choi, H. K. (1993). A study of perceptions on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Jeonju University Studies*, 273-286.
- Choi, H. K. (2004). Perceptions of elder abuse under caregiving situation and help-seeking behaviors: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elderly and adult children generation. *Korean J Popul Stud*, 27(1), 31-55.
- Hudson, M. F., Beasley, C. M., Benedict, R. H., Carlson, J. R., Craig, B. F., & Mason, S. C. (1999). *Elder abuse: Some African Views. J Interpers Violence*, 14(9), 915-939.
- Han, E. J.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eoul.
- Huh, N. S. (2003).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 Soc Welf*, 53, 209-230.
- Jo, A. J. (2008). Elderly abuse and what to do about it. *Health Welf Policy Forum*, 143, 16-29.
- Jo, A. J., Kim, S. K. & Kim, Y. K. (1999). A case study on status of aged parent's abu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S. K. (2007). *A research for reporter recognition level of elder abuse of responsible person and countermo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Kim, H. G. (2003). Elder abuse and neglect among Korean Americans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USA. *J Korean Gerontol Soc*, 23(4), 67-83.
- Kim, O. S., Yang, K. M., & Kim, K. H. (2005). Dependency, abuse, and depression by gender in widowed elderly. *J Korean Acad Nurs*, 35(2), 336-343.
- Kim, S. H., Kim, H. K., Park, C. S., Choi, Y. M., Choi, J. H., Han, D. H. & Huh, Y. S. (2005). *The elder abuse: Professional counselling*. Seoul: Sigma Press.
- Kim, Y. H., Kim, I. H., & Sohn, Y. J. (1998). Literacy study on abuse of the elderly and nursing interventio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7(1), 165-186.
- Ko, C. M. (2010). A study of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s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J Korean Acad Fund Nurs*, 17(10), 109-118.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Population Projection for Korea*. Retrieved April 20, 2010 from Web site: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
- Lee, Y. H. (2005).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Kyungi: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Lim, B. W., Ju, K. H., & Cho, S. E. (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s elderlies and general elderlies. *J Welf Aged* 43, 353-380.
- Mandiracioglu, A., Govsa, F., Celikli, S., & Yildirim, G. O. (2006). Emergency health care personnel'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elder abuse in Izmir. *Arch Gerontol Geriatr*, 43(2), 267-276.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A report of elder abuse cases*. Seoul: Korea.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 Moon, A., & Benton, D. (2000). Tolerance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among African American, Kore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J Multicult Soc Work*, 8(3/4), 283-303.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Gerontologist*, 33(3), 386-395.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A study of elder abuse in communitie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O'Toole, A. W., O'Toole, R., Webster, S., & Lucal, B. (1994). Nurses' responses to child abuse. *J Interpers Violence*, 9(2), 194-206.
- Seo, Y. (2000).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nd the condition of elder abuse. *J Welf Aged*, 7, 29-73.
- Song, M. S. (2007).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Nursing perspective. *Korean J Nurs Query*, 16(1), 78-101.

- Tilden, V. P., Schmidt, T. A., Limandri, B. J., Chiodo, G. T., Garland, M. J., & Loveless, P. A. (1994). Factors that influence clinicians'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family violence. *Am J Public Health, 84*(4), 628-633.
- Woo, K. H. (2002). The meaning of elder abuse and interventions for it: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people's perceptions. *Korean J Soc Welf, 50*, 109-129.
- Yang, K. M. (2004). A study of elder abuse in the domestic setting: Coping strategies and the consequences of elder abuse. *J Korean Acad Nurs, 34*(6), 1047-1056.
- Yonhap News (2010, June 14). Approximately seventy two percent of perpetrators of elder abuse are adult children,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
- Yoo, S. H., & Kim, C. S. (2004). A study of old persons' subjective perceptions on elder abuse. In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A study of current state and a countermeasure on elder abuse* (pp. 9-39). Seoul: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Ko, Chung Mee(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301 nurses and 326 elderlies (>60 years) living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research instrument utilized in this study to measure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were 11 of 12 scenarios adapted by Yoo & Kim from Moon and Williams(1993).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perceptions on elder abuse was 3.11 for nurses and 2.98 for elderlies. The most severely perceived type of abuse was sexual abuse, followed by physical abuse, neglect, financial abuse, and emotional abus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evident in perceptions of elder abuse in six of the scenarios and in all scenarios for intention to report. **Conclusion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effective measures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elder abuse.

Key words : Elder Abuse, Perceptions, Report, Nurses, Elderl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9